

1. 노선명은 일반도로 노선명을 적되, 일반도로 노선명이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2. 노선번호는 일반도로 노선번호(예: 도시계획 도로대로 1류 10호선,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를 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노선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3. 기점·종점란은 자전거도로의 기점·종점과 연결한 지번을 적는다.
4.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기준으로 한 쪽에 설치된 경우(양방향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에는 1개의 노선으로, 양쪽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노선으로 각각 구분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를 작성한다.